

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 결정

2026. 7. 7.

법무법인(유) 린 도산팀은 도산 분야의 최신 뉴스, 판례 및 법령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드립니다.

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(유) 린에게 있으며,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(CC BY-NC).

1. 사건개요

서울회생법원은 2025. 3. 4.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홈플러스 주식회사(이하 '홈플러스')에 대하여 2026. 7. 3.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. 홈플러스는 2025. 12. 29.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및 작성에 관한 법원허가를 받아, 2026. 6. 30.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,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(수정안 포함)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.

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의 매각이 성사되었으나, 잔존 사업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,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, 물품대금,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도 조달되지 않았던 것이 폐지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.

2. 향후의 예상 절차 진행 내용

그러나 위 폐지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 홈플러스는 폐지결정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(채무자회생법 제 290 조, 제 13 조 제 2 항), 원심법원(서울회생법원)

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폐지결정을 경정하여야 합니다(채무자회생법 제 33 조, 민사소송법 제 446 조).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폐지결정이 약 2,0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,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재개될 가능성(이른바 ‘재도의 고안’)이 있음을 밝혔습니다.

향후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되고(채무자회생법 제 290 조 제 2 항), 그에 따라 회생절차는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. 현실적으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거나, 재도의 고안이 성사되어 회생절차가 속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위 폐지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견련파산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만일 홈플러스의 파산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면, 파산관재인 또는 홈플러스 영업장(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신탁자산)의 수탁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공매처분과 관련한 각종 법률 분쟁(주로 부동산 매각대금의 우선 귀속순위와 관련)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언제든지 린 도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:

최효종 변호사 (hjchoi@law-lin.com, 02-3477-8695)
